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44호)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하여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고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함.

3. 주요내용

- 경쟁방법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 단 1회에 한하며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안 제3조제2호)
-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 할 때까지 기존금고가 업무 수행 (안 제10조제5항)
- 금고중도해지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도해지 시 새로이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함 (안 제11조제3항)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하여 시 금고지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업무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한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1회에 한하여 재지정 할 수 있고, 이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방법으로 지정
-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고가 현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금고중도해지시 새 금고 약정기간은 당초 체결한 약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240호, 2007. 6. 1)에 의거 2008. 7. 16일 제정된 조례로 공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조례안으로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 수의방법에 의해 금고를 재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